

[별표 1] 연구실적 인정기준 (제16조 제1항 관련) <개정 2023.08.21>

분야별	구 분	학 회 지			
		국내		국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	SCI급 학술지	일반학술지
학술논문	단독	100점	20점	300점	150점
	2인	70(80)점	14(16)점	210(240)점	105(120)점
	3인	50(60)점	10((12)점	150(180)점	75(90)점
	4인 이상	30(40)점	6(8)점	90(120)점	45(60)점
	석사학위논문	<삭제>			
	박사학위논문	<삭제>			
저 서	구 분	전문서적	교과용 1종도서	번역서	개정판
	단독	100점	100점	50점	30점
	2인	70(80)점	70(80)점	30점	10점
	3인	50(60)점	50(60)점	10점	0
	4인 이상	30(40)점	30(40)점	0	0
창작활동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2.연구영역」 중 창작활동 세부기준 준용				
산업재산권	특허등록		「교원업적평가규정」 준용		
자격	기술사 자격취득		150점		

* ()의 숫자는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인 경우임

- * 비고 : 1. 국내 일반학술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만을 인정한다.
 2. 국제 일반학술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만을 인정한다.
 3. 저서는 국내외 사업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한 서적으로 저자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 중·고등학교 1종교과용 도서, 전문대학 이상 교재만 인정한다.
 4. 연구실적은 전공 및 담당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하여 인정한다.

■ 창작활동 - 디자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한
전시	국제	저명전시관(또는 단체)주관	개인전	150점/회	
			단체전	80점/회	
		일반전시관(또는 단체)주관	개인전	120점/회	
			단체전	70점/회	
	국내	저명전시관(또는 단체)주관	개인전	100점/회	140점/연
			단체전	60점/회	
		일반전시관(또는 단체)주관	개인전	70점/회	
			단체전	40점/회	
작품의 게재	국제	개발 작품 전문지 게재		120점	50점/연
		계획 작품 전문지 게재		100점	
	국내	개발 작품 전문지 게재		50점	
		계획 작품 전문지 게재		30점	
평론	국제	전문매체 및 전문지 평론		50점	50점/연
		전문매체 및 전문지 리뷰		30점	
	국내	전문매체 및 전문지 평론		30점	
		전문매체 및 전문지 리뷰		10점	
전시/공모 전기획	국제	전시 / 공모전 기획 총감독		150점	
		전시 / 공모전 기획 커미셔너, 큐레이터		50점	
	국내	일반전시 / 공모전 기획 총감독		30점	30점/연

- 가. ½이상이 신작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에서 발표한 것만 인정
- 나. 동일한 작품을 순회전시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0%만 인정
- 다. 국내외의 저명 전시(미술)관 및 단체의 범주는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며, 교원업적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1) 국제 저명전시관 상파울로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등에 준하는 전시를 말함
 - 2) 국내 저명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현대화랑, 금호미술관, 예술의 전당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단체 또는 기관의 주최로 개최하는 전시를 지칭함
 - 3) 국제 일반전시관 국제 저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제 전문 전시관(전시면적 50평 이상)에 준하는 전시를 말함
 - 4) 국내 일반전시관 국내 저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 전문 전시관(전시면적 30평 이상)에 준하는 전시를 말함
 - 5)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초청 전시회의 경우 주관 단체의 공식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국제전은 5개국 이상 참여하는 전시회만을 인정함
- 라. 대학 주관 행사의 경우 연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창작활동 - 음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한	
공연(50분 내외) 앨범 발표	국제	저명공연장(또는 단체)주관, 월드와이드발매앨범	개인	150점/회	140점/연
			공동	80점/회	
		일반공연장(또는 단체)주관	개인	120점/회	
			공동	70점/회	
	국내	저명공연장(또는 단체)주관, 국내한정발매앨범	개인	100점/회	
			공동	60점/회	
	일반공연장(또는 단체)주관	개인	70점/회		
		공동	40점/회		
평론	국제	전문매체 및 전문지 평론		50점	50점/연
		전문매체 및 전문지 리뷰		30점	
	국내	전문매체 및 전문지 평론		30점	
		전문매체 및 전문지 리뷰		10점	
음악관련 매체 출연,공연 (tv, 케이블, 구독자 10,000명 이상 음악 관련 유튜브 채널)	1회 30분 이상/회당		30점	150점/연	
	1회 10분 이상/회당		20점		
	1회 10분 미만/회당		10점		

가.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발표한 것을 인정

- 1) 다만 전문 공연장 이외의 곳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을 요청 또는 진행하는 공식단체의 공문, 팸플렛 등을 참조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2) 대중음악 등의 공연장(TV매체 등)은 그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나. 동일한 공연을 순회공연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0%만 인정
- 다. 합창·협주·부분연주 등은 공연·발표 실적 기준의 70% 인정
- 라. 음악감독(감독급 직책) 또는 기획·프로듀싱·작사·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분야실적은 공연·발표 실적 기준의 70% 인정
- 마. 발매앨범의 기준은 음원포털사이트에 정식으로 발매되어 음원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며, 월드와이드발매 앨범은 국제저명공연, 발표와 동일한 배점, 국내한정 앨범은 국내저명공연, 발표와 동일한 배점으로 인정한다.(발매앨범의 경우 5트랙 이상 또는 런닝타임 20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그 이하인 경우 실적 기준 20%만 인정함)
- 바. 음악감독(감독급 직책) 또는 기획·프로듀싱·작사·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분야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음원저작권협회에 음원등록이 된 경우 1곡당 10점 (음원저작권협회의 등록기준은 1. 음원권리자의 국제표준 ISRC코드 2. KOMCA 저작권협회의 작곡 및 작사저작권등록 증명 3.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의 실연권 증명, 상기 3종류를 인정.)

사. 국내외의 저명 공연장 및 단체의 범주는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1) 국제 저명 공연이란 G8국가의 전문공연장(300석 이상)에서 개최한 50분 이상의 발표회 및 국제음악제(10개국 이상 참가)에서의 발표를 말함
- 2) 국제 일반 공연이란 국제 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제 전문공연장에서 개최한 50분 이상의 발표를 말함
- 3) 국내 저명 공연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전문공연장(300석 이상)에서 개최한 50분 이상의 발표를 말함
- 4) 국내 일반 공연이란 국내 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문공연장에서 개최한 50분 이상의 발표를 말함
- 5) 동일 공연 발표에서 지휘, 작곡, 독주, 독창 등 다역한 경우 가장 높은 평점 1가지만 인정함

아. 90분 이상의 공연의 경우 실적 기준의 130% 인정

자. 대학 주관 행사의 경우 연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창작활동 - 체육 · 태권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한
공연·발표	국제	단독공연(주연)	150점/회	
		해외초청 시범 공연연출, 기획, 안무, 감독, 제작		
		합동공연	120/회	
	국내	단독공연(주연)	100점/회	140점/연
		전국단위 문화행사 공연연출, 기획, 안무, 감독, 제작		
		합동공연	70점/회	
감독·코치·심판	국제	올림픽	150점/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100점/회	
		아시아 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50점/회	
		종목별 국제 경기대회	30점/회	
	국내	공인된 전국대회	20점/회	50점/연

- 가. 공연·발표는 단독 공연 또는 주역 100%, 2~3인 연합공연 또는 조역 70%, 4인 이상 합동공연 또는 단역 50% 인정
- 나. 역할이 중복된 경우 최대배점만 인정
- 다. 동일한 공연·발표 내용의 재공연은 1회에 한하여 30%만 인정
- 라. 국내·외의 저명 공연(대회) 및 단체의 범주는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며, 교원업적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마. 종목별 국제 경기 대회는 5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를 의미함
- 바. 전국대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대학의 총장배, 태권도 관련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기준으로 함
- 사. 대학 주관 행사의 경우 연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창작활동 : 문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한
작품 게재 및 출판	장편소설	100점	-
	중·단편소설	50점	50점/연
	시·수필·공트, 아동문학	20점	
평론 및 리뷰	전문매체 및 전문지 평론	10점/건	30점/연

가. 문학작품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반드시 ISBN 또는 ISSN을 부여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발행하는 저작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저서만을 인정

- 1) 문학작품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동지원시스템(www.seoji.nl.go.kr)에서 서지정보를 출력하여 제출하며, 해당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함
- 2) 전자책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ISBN 또는 ISSN을 부여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발행하는 저작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경우 인정
- 3) 교원의 전공 및 소속 학과(부), 담당 교과목과 관련 없는 경우, 비매품으로 발간된 경우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물의 경우(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에는 문예분야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장편소설은 200쪽 이상인 경우 100%, 150쪽 이상인 경우 70%, 100쪽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인정

다. 평론 및 리뷰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창작활동 : 영상 공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한
장편	감독, 제작, 기획, 연출, 극작, 희곡, 시나리오	국제	저명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TV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150점	
			기타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120점	
		국내	저명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TV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100점	
			기타 연극 및 영화제 상영작	70점	
	부문별감독, 번역, 디자인	국제	저명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TV 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120점	
		국내	저명 공연 및 영화제의 상영작 극장상영작, TV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80점	
단편	감독	국제	저명 공연 및 영화제 상영작 (30분 이상 60분 미만)	80점	70점/연
		국내	저명 공연 및 영화제 상영작 TV방영물(30분 이상 60분 미만)	70점	
	제작, 스텝	국내	TV방영물(30분 이상 60분 미만)	40점	
연기	TV방영	1회 60분 이상/회당		30점	150점/연
		1회 30분 이상/회당		20점	
		1회 30분 미만/회당		10점	
	공연·영화	장편		150점	
		단편(30분 이상 60분 미만)		100점	

가. 연극희곡 및 영화 장편시나리오의 경우 연극,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한 희곡이나 시나리오 단행 본인 경우에 한함

나. 단편 영화의 경우 시나리오와 촬영된 영상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다. 모든 동일 작품의 재공연이나 순회공연은 인정하지 않음

라. 메인감독은 연극, 영화의 파트별 감독을 말함

마. 스텝 디자인은 조명, 음악, 의상, 분장, 미술(프로덕션 디자인), 안무, 액팅코치, 특수효과(시각), 음향, 녹음, 촬영, 편집, 슈퍼바이저를 말함

바. 공동 제작 및 연출, 스텝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원 인정환산율을 적용

사. 연기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을 원칙으로 하며 조연은 주연의 70%를 인정

아. 연구업적의 기산일은 상영 및 공연 일자를 기준으로 함

- 1) 국제 저명 연극제 및 영화제란 아비뇽 국제연극제, ITI Theatre of Nations 연극제, 에딘버러 연극제, 스트라트포드 연극제, 더블린 연극제, 런던 국제 연극제, 베세토 연극제, 아카데미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동경 영화제, 홍콩영화제 등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영화제 또는 G8 국가의 전문 극단이 제작한 작품 또는 저명한 국제연극제의 초청을 받은 작품으로서 G8국가의 전문 공연장(300석 이상)

- 2) 국내 저명 연극제 및 영화제란 서울국제연극제, 전국연극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과천마당극

제, 마산국제연극제, 거창연극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춘사 나운규 영화예술제, 서울독립영화제, 대한민국대학영화제, 영상기술학회, 미탁 영화제, 미장센 영화제, 부산국제아시아 단편영화제 또는 국내 전문극단이 제작한 작품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인된 공연장(100여석 이상)

3) 공동주연시 단독 주연급으로 인정

자. 대학 주관 행사의 경우 연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창작활동 : 모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상한
패션행사 연출, 기획 등	국제	저명 패션행사 연출, 기획, 감독, 제작	150점	
		일반 패션행사 연출, 기획, 감독, 제작	100점	
	국내	저명 패션행사 연출, 기획, 감독, 제작	100점	
		일반 패션행사 연출, 기획, 감독, 제작	70점	70점/연
패션행사 출연	국제	국제 저명 패션행사 출연모델	100점	
	국내	국내 저명 패션행사 출연모델	70점	
TV, 케이블, OTT, 구독자 10,000명 이상 패션 관련 유튜브 또는 기타 온라인 채널 매체 출연 (모델, 패션, 뷰티, 건강 관련)		1회 50분 이상/회당	30점	150점/연
		1회 20분 이상/회당	20점	
		1회 20분 미만/회당	10점	
패션지	국제	ISBN 또는 ISSN이 부여된 잡지 표지 모델	70점	150점/연
	국내		40점	
광고모델		TV방영 패션 및 광고 모델	50점	
		기타 패션화보 및 광고 모델	20점	

가. 국제 저명 패션행사는 파리패션위크, 런던패션위크, 뉴욕패션위크, 밀라노패션위크 등 4대 패션 위크 및 도쿄패션위크,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개인컬렉션 등에 한함

나. 국내 저명 패션행사는 서울패션위크, 국내 활동 디자이너컬렉션, 내셔널브랜드 컬렉션 및 프리젠테이션쇼 등에 한함. 이 외 패션행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며 인정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

다. 패션지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반드시 ISBN 또는 ISSN을 부여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발행하는 저작물에 한하며, 패션지명이 다르더라도 동일 건에 대하여는 1건만 인정

라. TV, 케이블, OTT, 구독자 10,000명 이상 유튜브 또는 기타 온라인 채널 매체 출연은 패션, 뷰티, 건강과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촬영일수와 무관하게 매체 결과물의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마. TV출연 시 모델 및 패션과 관련하여 패널로 참여한 경우도 인정

바. 대학 주관 행사의 경우 연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증빙자료

1) 패션행사 연출, 기획 등 : 주최측 확인서 또는 팜플렛(본인확인 가능)

2) 패션행사 출연, TV, 케이블, 구독자 10,000명 이상 유튜브 또는 기타 온라인 채널 매체, 패션지 및 광고모델 : 주최 측 확인서와 관련 사진

[별표 2] 연구 및 교육경력 산출기준(제19조 관련)<개정 2023.08.21>

경 령 내 용	환산인정률(%)
1. 교육경력	
①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②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 및 강사의 교육경력	50(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④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경력	50
⑤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⑥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⑦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⑧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⑨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⑩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70
⑪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40

경 령 내 용	환산인정률 (%)
2. 연구경력	
①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②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	석사과정 재학년수(2년을 초과하지 못함)
③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박사과정 재학년수(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④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	석사과정 재학년수(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0.7
⑤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전문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100
⑥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100
⑦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⑧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100
⑨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100
⑩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100
⑪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문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100
⑫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연구원 근무한 경력	10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
3. 산업체등 근무경력	
①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근무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②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④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대기업체 등	70
.중기업체	
⑤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⑥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⑦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100
⑧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0
⑨「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⑩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 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00
⑪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⑫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70
⑬국가, 공공단체 또는 대학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00
⑭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70
⑮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70
⑯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
⑰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	70